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의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 미흡

「농지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해 추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농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등 4개 구·군에서는 불법전용 농지 72건(46,231㎡)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농지불법 전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 미흡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¹¹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 기한내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 이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복구명령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농지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집행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추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농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등 2개 구·군에서는 현장사무실 설치 등 11건(9,337㎡)에 대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농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농지의 타

11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민원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허가기간(연장포함)이 다름.

용도 일시사용 허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청장, 금정구청장,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추가고발, 대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선 즉시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원상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